변경시행일 : 2012년 8월 1일

투자설명서 변경

(1) 기재 정정 사유

1.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 종류C-w 신설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변경 대상 항목> -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운용현황)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
2. 종류 C-w 신설	<변경 대상 항목> - 제1부 1.집합투자기구 명칭 - 제2부 1. 집합투자기구 명칭/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류 C-w <신설>**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등 관련)	<변경 대상 항목> - 제5부 3. 가. 업무보고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제5부 3. 나. (2)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ingi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1) 기재 정정 사유

1.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 종류C-w 신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변경 대상 항목> - 제2부 6.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운용현황) -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제4부 1. 재무정보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2년 6월 4일)
2. 종류 C-w 신설	<변경 대상 항목> -제1부 1. 명칭 -제3부 1. 수수료 및 보수/3. 기준가격 산정 / 매입, 환매 절차(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w <신설>**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집합투자규약

(1) 기재 정정 사유

1. 종류C-w 신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종류C-w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39조(보수) 제10조(환매수수료)	**종류 C-w <신설>** **-가입자격: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8**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신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생 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이후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후 생략)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②(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법 시행령 제216조 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현행과 같음)